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낮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년 10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12월 0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87-3500, <http://www.midasasset.com>),
금융투자협회(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협회(<http://www.kofia.or.kr>)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더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펀드코드: EN493]

투자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또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주식형 및 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과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주식 및 ETF,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으로 인해 **가격변동위험, ETF투자위험, 국가위험, 파생상품 관련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마이더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국내 채권 관련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5% 이하로 하며, 204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클래스종류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8% 이내	0.40	0.20	0.910	0.40	120	163	208	304	5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70	0.50	1.040	0.70	72	147	226	396	90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4% 이내	0.30	0.10	0.650	0.30	70	103	136	209	4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45	0.25	0.730	0.45	46	95	145	255	58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 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및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혼합자산형) (%)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천주	1971	책임 (본부장)	19개	6,378	24.53	22.93	30.94	24.60	23년 2개월
유주형	1986	부책임 (부장)	18개	3,948	25.59	32.15			10년 2개월
김재현	1992	부책임 (과장)	6개	1,757	24.53	-			4년 5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운용전문인력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신탁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중소형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 전략 수행에 따른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국내 채권 관련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설정하여 주식 및 채권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

		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혼합자산 투자신탁 투자위험	일반적으로 혼합자산 투자신탁은 국내의 다양한 증권, 특별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전략에 따라 지역간 또는 자산의 종류간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에 따라 특정 지역/자산/섹터 등에 집중투자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변동성 증가, 수익률 저하 등 본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별 또는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이 투자위험을 반드시 낮춰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시까지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간접 투자로 인한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세계 각국(신흥시장 포함)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국가의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주식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 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환매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D+9)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p>집합투자기구</p> <p>수익자</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5년 12월 02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C-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마이더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EN49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N494
수수료선취-온라인(Ae)	EN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N4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N4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EN4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EN4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N5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EN5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	EN5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N50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N5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N5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EN50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혼합자산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미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이투자신탁은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마이더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EN49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N494
수수료선취-온라인(Ae)	EN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N4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N4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EN4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EN4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N5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EN5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	EN5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N50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N5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N5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EN50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5-08-21	최초 등록
2025-09-05	월드EMP모펀드 비교지수 추가 반영
2025-12-02	모펀드 추가(마이더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대표전화 : 02-3787-3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자산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천주	1971	책임 (본부장)	19개	6,378	24.53	22.93	30.94	24.60	*경력년수: 23년 2개월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카이스트 금융공학(석사) -연세대학교 투자정보공학(박사) -95.01~99.08 대우중공업 연구소 -99.09~02.08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02.08~03.09 한국투자신탁운용 -03.10~20.04 삼성자산운용 -20.04~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유주형	1986	부책임 (부장)	18개	3,948	25.59	32.15			*경력년수: 10년 2개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09.12~12.08 한국투자증권 -12.09~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김재현	1992	부책임 (과장)	6개	1,757	24.53	-			*경력년수: 4년 5개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카이스트 금융공학 석사 -20.08~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모

운용역	직위	운용 규모(억원)
이천주	책임운용역	1,643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서준현	1989	책임 (과장)	3개	936	59.57	33.42	62.46	33.81	*경력년수: 2년 6개월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15.05월~19.01월 NH 투자증권 -19.01월~21.09월 BNK 자산운용 -21.09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채광국	1997	부책임 (대리)	1개	750	-	-			*경력년수: 7개월 -고려대학교 통계학, 금융공학 -22.07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서준현	책임운용역	2025.03.20~현재
채광국	부책임운용역	2025.03.20~현재
오화영	책임운용역	2020.09.01~2025.03.20
신진호	부책임운용역	2020.09.01~2025.03.20

·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남훈	1978	책임 (수석 본부장)	14개	3,211	40.78	39.52	40.78	39.52	*경력년수: 17년 2개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04.01~07.07 대우증권 -07.07~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유주형	1986	부책임 (부장)	18개	3,948	40.51	39.34			*경력년수: 10년 2개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09.12~12.08 한국투자증권 -12.09~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김형중	부책임운용역	2022.04.26~2024.09.26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마이더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파생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천주	1971	책임 (본부장)	19개	6,378	78.79	45.28	78.79	45.28	*경력년수: 23년 2개월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카이스트 금융공학(석사) -연세대학교 투자정보공학(박사) -95.01~99.08 대우중공업 연구소 -99.09~02.08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02.08~03.09 한국투자신탁운용 -03.10~20.04 삼성자산운용 -20.04~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김재현	1992	부책임 (과장)	6개	1,757	78.79	-			*경력년수: 4년 5개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카이스트 금융공학 석사 -20.08~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김재현	부책임운용역	2023.12.05~현재

주 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마이더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국내외혼합 재간접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유주형	1986	책임 (부장)	18개	3,948	22.54	24.73	22.54	24.73	*경력년수: 10년 2개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09.12~12.08 한국투자증권 -12.09~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오남훈	1978	부책임 (수석 본부장)	14개	3,211	22.54	24.73			*경력년수: 17년 2개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04.01~07.07 대우증권 -07.07~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신원상	1991	부책임 (과장)	9개	932	-	-			*경력년수: 4개월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 KAIST 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 19.12~20.08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20.11~24.04 삼일회계법인 - 24.04~25.05 교보역사자산운용 - 25.05~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직위	운용 기간
유주형	책임운용역	2022.06.10~현재
오남훈	부책임운용역	2022.06.10~현재
신원상	부책임운용역	2025.06.26~현재
김형중	부책임운용역	2022.06.10~2024.09.26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마이다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두자신탁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자산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유주형	1986	책임 (부장)	18개	3,948	25.59	32.15	30.94	24.60	*경력년수: 10년 2개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09.12~12.08 한국투자증권 -12.09~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오남훈	1978	부책임 (수석 본부장)	14개	3,211	25.20	36.05			*경력년수: 17년 2개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04.01~07.07 대우증권 -07.07~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신원상	1991	부책임 (과장)	9개	932	-	-			*경력년수: 4개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KAIST 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19.12~20.08 에셋플러스자산운용 -20.11~24.04 삼일회계법인 -24.04~25.05 교보약사자산운용 -25.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유주형	책임운용역	2024.04.26~현재
오남훈	부책임운용역	2024.04.26~현재
신원상	부책임운용역	2025.06.26~현재
오남훈	책임운용역	2021.10.21~2024.04.26
유주형	부책임운용역	2021.10.01~2024.04.26
김형중	부책임운용역	2022.04.26~2024.09.26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기민수	1980	책임 (본부장)	42개	90,231	4.48	5.28	4.56	5.48	*경력년수: 14년 6개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08.06~11.04 동부자산운용 -11.04~12.07 디멘전투자자문 -12.07~17.05 흥국자산운용 -17.05~19.06 DB 자산운용 -19.07~19.12 라임자산운용 -19.12~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김민수	1982	부책임 (부장)	29개	36,537	4.48	5.28			*경력년수: 13년 10개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호주국립대 응용통계학 석사 -09.01~10.10 신한투자증권 -11.12~18.01 HDC 자산운용 -18.01~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 마이더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유주형	1986	책임 (매니저)	18개	3,948	40.51	39.34	40.78	39.52	*경력년수: 10년 2개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09.12~12.08 한국투자증권 -12.09~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오남훈	1978	부책임 (매니저)	14개	3,211	40.78	39.52			*경력년수: 17년 2개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04.01~07.07 대우증권 -07.07~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신원상	1991	부책임 (매니저)	9개	932	-	-			*경력년수: 4개월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 KAIST 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 19.12~20.08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20.11~24.04 삼일회계법인 - 24.04~25.05 교보약사자산운용 - 25.05~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신원상	부책임운용역	2025.06.26~현재

김형중	부책임용역	2022.04.26~2024.09.26
-----	-------	-----------------------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혼합자산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C-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 펀드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마이더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마이더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상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5% 이하로 합니다. 다만, 204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국내 채권 관련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5% 이하로 하며, 204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신탁재산의 100% 이하 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3. 마이다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4.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마이다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투자신탁 6. 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7. 마이다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p>1-1. 상기 모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5% 이하로 한다. 다만, 204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p> <p>1-2. 상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고, 상기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p>
유동성자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 매수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6조제1호내지제2호를 위반 시 15일간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70% 이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
⑤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 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 이내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 채권이나 주식 ·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	수익증권 등	40% 이하(상장지 수집투자기구의 경우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 행한 주식
⑦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⑧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 는 경우를 말함
⑨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 함
<p>(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p> <p>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 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p> <p>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p> <p>(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p>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①~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⑤~⑨,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다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취득시 신용등급 A0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법 제5조제항 및 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 환매조건부 매수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2) 수익증권 등,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마이더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60% 이상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단,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 이하로 제한)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2-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를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 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7. 증권의 대여 ^(주1)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9.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11.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1, 3, 4, 5, 6에 대하여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투자대상 1~6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7, 8, 9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 투자대상 3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마이더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집합투자증권	56%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지분증권	44% 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채권	5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5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5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 금의 합계액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15% 이하(헤지 또는 헤지 외 목적)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옵션, 주 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 물, 통화선물, 통화옵션,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 4.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
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1)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 2) 장내파생상품, 증권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
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 유예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
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마이다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두자신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10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2. 채권	10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집합투자증권 등	10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 이내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7. 증권의 대여 ^(주1)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9.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11.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1, 2, 3, 4, 5에 대하여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계약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7, 8, 9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두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2-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2.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4. 수익증권 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5.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6.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8.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10.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1, 2, 3, 4에 대하여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5, 7, 8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마이다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취득시 신용등급 A0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 법 제5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법 제5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수익증권 등	40% 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 환매조건부 매수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2) 수익증권 등, 증권에 대한 대여,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에 대한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 	

	<p>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p>	<p>-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p>	<p>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p>

	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제외한 상기 투자 제한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마이더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두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p>	
<p>2. 동일종목 투자</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p>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 246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동일법인 투자	3.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3.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제한 2~12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마이더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	최초설정일로부터

	<p>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1 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p>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파생상품 매매	<p>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p>	<p>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p>최초설정일</p>

	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로부터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 투자 제한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 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단기대출, 계열회사 발행 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제외)

- 마이다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두투자신탁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파생상품 매매	3.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7.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8.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 투자제한 2, 3, 5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두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매매	3.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6.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 투자제한 2, 3, 5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마이더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p>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동일법인 투자	3.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3.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제한 2~13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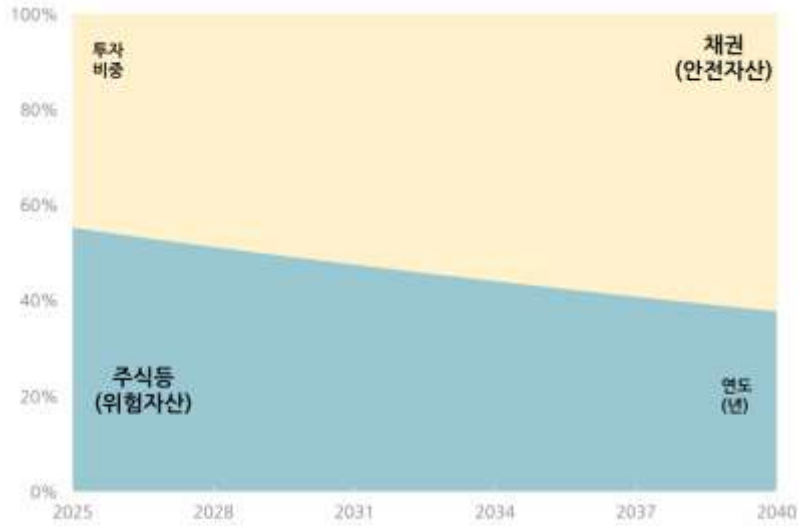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주식 관련 ETF 및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분산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이자·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특정 목표시점(이 투자신탁의 경우 204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내·외 주식 및 주식 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모델(Glide Path)

한국인의 연령별 투자기대수익, 변동성 리스크, 은퇴시점 수익 보존(Value at Risk) 등을 감안하여 생애주기 자산 배분 모델을 수립하며, 은퇴까지 잔여기간 변화에 따라 모펀드 투자비중 조절을 통해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합니다.

TDF2040의 경우 설정 시점에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할 계획이며, 타겟 시점(이 투자신탁의 경우 2040년)이 임박할수록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이다스에셋 자산배분곡선(Glide Path)>

* 상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5% 이하로 합니다. 다만, 204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합니다.

-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간 자산배분: 리스크 패리티(Risk Parity) 방법론 등에 의한 포트폴리오 구성

위험자산(주식 및 주식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 혼합자산형 모펀드) 내에서 개별 모펀드별로 수익률 변동성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에 기여하는 정도가 유사하게 되도록 투자 비중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모펀드는 비중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의 비중은 확대하여 성과 및 변동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간 자산배분은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의 내부기준 변경, 운용역의 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p><주요 투자대상자산> 국내주식에 70%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 상장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이 투자신탁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정의는 ‘KOSPI시가총액 100위까지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KOSDAQ 종목 전체’로 합니다.</p> <p><주요 투자전략> ①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한 투자 :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만의 글로벌 트렌드 및 업종동향 분석들을 활용하여 글로벌 성장 트렌드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강소기업</p>

을 발굴하여 투자할 것입니다.

- ② **저성장시대 구조적 성장 중소기업** :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기 위해, 독점적 지배력과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이익성장을 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내수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해외시장에서의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위주로 투자할 것입니다.
- ③ **턴어라운드 국면진입 중소기업** : 최악의 상황이 지나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하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PSR)이 낮아, 마진을 회복시 큰 폭의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고, 높은 기술력 혹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위주로 투자할 것입니다.
- ④ **저평가된 우량 중소기업** : 보유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에 투자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PBR)이 낮아,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부동산 및 자회사 등 보유자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예시〉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주식	이수페타시스	3.75
2	주식	티엘비	3.38
3	주식	SK 하이닉스	3.35
4	주식	호성중공업	2.94
5	주식	삼성전기	2.74
6	주식	삼성전자	2.48
7	주식	현대로템	2.34
8	주식	GS 피앤엘	2.11
9	주식	이엔에프테크놀로지	2.07
10	주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5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자산〉

해외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식들을 발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대상 국가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이며,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 유통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주식예탁증서(DR) 포함)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장기 접근 방식을 통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 시장의 단기적인 유행과 단기적인 기회를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는 리서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실현 가능한 미래의 장기 성장성을 감안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보유한 종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순히 시장을 따르는 소극적인 인덱스 투자가 아닌,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 예시>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주식	TAIWAN SEMICONDUCTOR MANUFAC	10.49
2	주식	Alibaba Group Holding Ltd	3.82
3	주식	TENCENT HOLDINGS LTD	3.60
4	주식	SK 하이닉스	3.54
5	주식	MITSUBISHI HEAVY INDUSTRIES	3.19
6	주식	두산에너지	2.41
7	주식	ADVANTEST CORP	2.27
8	주식	SONY GROUP CORPORATION	2.17
9	주식	HUA HONG SEMICONDUCTOR LTD	2.17
10	주식	IBIDEN	2.04

**마이더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주요 투자대상자산>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KOSPI200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로, 제한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액티브퀀트 전략 등을 통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초과수익 추구 전략

- (1) 주식, 주가 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며, 제한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주식선물, 코스닥선물 등도 투자합니다.
- (2) 계량 모델(Quant Model)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인핸스드(Enhanced) 인덱스 전략 추구
 - 팩터(Factor) 투자: 가치(Value), 수익성(Profitability), 성장(Momentum) 등의 팩터를 조합하여 종목 선정
- (3) 기업 탐방 등의 전통적인 리서치를 통한 종목 선정
- (4) 지수 구성종목 변경 예상 종목, 분할/합병/증자/공개매수, 블록딜(Block Deal, 대량매매), 공모주 등 주요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따른 매매
- (5) 통계적 기반의 선물 트레이딩, 보통주/우선주 등의 페어트레이딩
- (6)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

는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매수하고, 높은 것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 추구의 전략

(7) 보유 주식 대여를 통한 이자 수취

(8) 손실이 제한적인 포지션 위주로 옵션매매 등

<포트폴리오 예시>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주식	SK 하이닉스	15.65
2	주식	삼성전자	13.90
3	파생상품	코스피 200 F 202512	12.92
4	주식	삼성전자우	11.36
5	주식	현대차	1.97
6	주식	KB 금융	1.91
7	주식	두산에너지빌리티	1.90
8	주식	NAVER	1.74
9	주식	대한조선	1.72
10	주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0

<주요 투자대상자산>

전세계 주식 관련 ETF 등 집합투자증권에 56% 이상을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경기 국면에 따라 최적의 전략 조합을 구성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동 펀드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매크로 전략: 개별국가 및 산업/섹터의 경기 사이클 분석을 통해 회복 및 확장기에 진입한 유망 투자대상 선정
- 고배당 전략: 고배당 자산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컴과 자본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변동성 제어
- 구조적 성장 전략: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테마 및 트렌드를 포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

<포트폴리오 예시>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집합투자증권	ISHARES MSCI ACWI ETF	21.70
2	집합투자증권	SPDR S&P 500 ETF TRUST	14.47
3	집합투자증권	VanEck Semiconductor ETF	7.82
4	집합투자증권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7.62
5	집합투자증권	TECHNOLOGY SELECT SECT SPDR	7.57
6	집합투자증권	FIRST TRST NASD CL EDG SGIIF	3.76

마이더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	집합투자증권	VANGUARD TELECOMMUNICATION SERVICE ETF	3.54																																												
	8	집합투자증권	INDUSTRIAL SELECT SECT SPDR	3.13																																												
	9	집합투자증권	마이더스 일본테크액티브	2.97																																												
	10	집합투자증권	AMERICAN HEALTHCARE REIT INC	2.96																																												
마이더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투자신탁	<p><주요 투자대상자산> 다양한 달러 인컴 자산(미국 배당주와 우선주, 배당 및 채권 관련 ETF) 및 글로벌 리츠(REITs) 등에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p> <p><주요 투자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멀티인컴 자산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 이익성장, 글로벌 성장 산업에 부합하는 인컴 성장주에 투자해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함께 추구하며, 배당금 재투자를 통해 총 수익(Total Return)을 끌어올리는 전략 -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글로벌 리츠에 투자해 초과 수익과 함께 포트폴리오 변동성 축소를 추구하는 전략 <p><포트폴리오 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자산구분</th> <th>종목명</th> <th>투자비중(%)</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집합투자증권</td> <td>FINANCIAL SELECT SECTOR SPDR</td> <td>13.74</td> </tr> <tr> <td>2</td> <td>집합투자증권</td> <td>ROUNDHILL MAGNIFICENT SEVEN</td> <td>8.62</td> </tr> <tr> <td>3</td> <td>주식</td> <td>NVIDIA CORP</td> <td>6.93</td> </tr> <tr> <td>4</td> <td>주식</td> <td>APPLE INC</td> <td>6.62</td> </tr> <tr> <td>5</td> <td>주식</td> <td>AMERICAN ELECTRIC POWER</td> <td>5.09</td> </tr> <tr> <td>6</td> <td>집합투자증권</td> <td>AMERICAN HEALTHCARE REIT INC</td> <td>4.72</td> </tr> <tr> <td>7</td> <td>집합투자증권</td> <td>WELLTOWER INC</td> <td>4.43</td> </tr> <tr> <td>8</td> <td>주식</td> <td>WAL-MART STORES INC</td> <td>4.18</td> </tr> <tr> <td>9</td> <td>주식</td> <td>AMAZON.COM INC</td> <td>4.07</td> </tr> <tr> <td>10</td> <td>주식</td> <td>SPOTIFY TECHNOLOGY SA</td> <td>3.59</td> </tr> </tbody> </table>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집합투자증권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13.74	2	집합투자증권	ROUNDHILL MAGNIFICENT SEVEN	8.62	3	주식	NVIDIA CORP	6.93	4	주식	APPLE INC	6.62	5	주식	AMERICAN ELECTRIC POWER	5.09	6	집합투자증권	AMERICAN HEALTHCARE REIT INC	4.72	7	집합투자증권	WELLTOWER INC	4.43	8	주식	WAL-MART STORES INC	4.18	9	주식	AMAZON.COM INC	4.07	10	주식	SPOTIFY TECHNOLOGY SA	3.59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집합투자증권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13.74																																													
2	집합투자증권	ROUNDHILL MAGNIFICENT SEVEN	8.62																																													
3	주식	NVIDIA CORP	6.93																																													
4	주식	APPLE INC	6.62																																													
5	주식	AMERICAN ELECTRIC POWER	5.09																																													
6	집합투자증권	AMERICAN HEALTHCARE REIT INC	4.72																																													
7	집합투자증권	WELLTOWER INC	4.43																																													
8	주식	WAL-MART STORES INC	4.18																																													
9	주식	AMAZON.COM INC	4.07																																													
10	주식	SPOTIFY TECHNOLOGY SA	3.59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p><주요 투자대상자산>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합니다.</p> <p><주요 투자전략> 자산을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A- 이상 신용등급의 회사채와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 듀레이션 전략: 금리전망에 따른 듀레이션 조절을 통한 초과수익 추구(통상 기준 듀레이션 1.7년±0.5년 범위 내 듀레이션 조절)
- 회사채 투자: A-등급 이상 회사채 편입으로 이자수익 증대
- 커브(Curve) 전략: 저평가된 잔존만기 구간대의 채권 편입, 가격상승 차익 추구
- 개별종목 신용등급 상향으로 인한 가격상승 차익 추구

〈포트폴리오 예시〉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채권	국고 02250-2806(25-4)	5.69
2	채권	통안 02620-2704-02	3.58
3	채권	한국투자캐피탈 131-2	3.56
4	채권	CJ ENM27-2	3.56
5	채권	전자단기사채(에이치씨디제십일차 20250924-91-1(단))	3.55
6	채권	국고 03250-2803(23-1)	2.74
7	채권	애큐온캐피탈 247-2	2.69
8	채권	전자단기사채(키움에프앤아이 20251028-55-3(단))	2.67
9	채권	한국가스공사 435	1.83
10	채권	아이엠캐피탈 114-3	1.83

마이더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자산〉

글로벌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에 기반한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 등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 외에 관련한 글로벌 ETF(상장지수투자신탁)를 40% 미만으로 활용하여 투자 대상을 확장하고 분산투자를 추구합니다.

- 글로벌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장기 접근 방식을 통해 향후 이익전망이 매력적인 성장주를 선별하여 투자
- 균형 있는 섹터/국가 배분으로 변동성은 낮추면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추구
- GARP(Growth At Reasonable Price) 투자 전략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격과 내재가치를 비교하여, 현재 저평가되었으나 실현 가능한 미래의 장기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다양한 관련 글로벌 ETF 상품을 적극 활용해 투자 대상 확장 및 분산투자
 - ✓ 종목 이외 40% 범위 내에서 글로벌 ETF 상품을 적극 활용, 투자 대상 다양화 및 수익률 극대화 효과

〈포트폴리오 예시〉

No	자산구분	종목명	투자비중(%)
1	주식	NVIDIA CORP	6.97
2	주식	MICROSOFT CORP	6.25
3	주식	BROADCOM INC	6.06
4	주식	APPLE INC	5.76
5	주식	ALPHABET INC -CL C	4.37
6	주식	AMAZON.COM INC	3.75
7	주식	Meta Platforms Inc	3.07
8	주식	BLOOM ENERGY CORP- A	2.86
9	주식	Tesla Inc	2.85
10	주식	SPOTIFY TECHNOLOGY SA	2.75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포트폴리오 예시는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모투자신탁의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명칭	위험관리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

	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p>마이더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p>	<p>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파생형 투자신탁으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p> <p>(가) 추적오차 연 4% 이하가 되도록 관리 추구하며, 산출시 미수배당 발생 일 제외 기법 등을 활용</p> <p>(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p> <p>(다) 추적오차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도달시 한도 이내가 되도록 리밸런싱 실시</p>
<p>마이더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	<p>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및 투자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p>
<p>마이더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투자신탁</p>	<p>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ETF, 리츠 등에 투자하는 혼합자산 투자신탁으로 주식, ETF, 리츠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p>

	<p>하시기 바랍니다.</p> <p>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p>
<p>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채권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채권,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p> <p>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마이더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p> <p>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p>

4)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환헤지란?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5)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비상 상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 단계별 비상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① 비상상황 가능성 인지 단계(1 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상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 발생 원인 파악, 환매 자금 마련 스케줄 점검 등 시행
- ② 비상상황 우려 단계(2 단계): 1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시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대응방안 및 비상계획 마련
- ③ 비상상황 발생 단계(3 단계): 2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 혹은 1 단계 또는 2 단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비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매연기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가 방안 강구

이후에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화 과정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가격이 현저히 불리하여 잔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하게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치 강구할 계획입니다(환매연기 여부 결정, 관련 부서 통지, 판매회사 협의, 대고객 안내, 수익자 총회 등).

6)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자산에 분산투자하며 Target Date 별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로서, 투자 비중의 변화를 반영할 비교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자산인 아래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마이더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마이더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마이더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상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5% 이하로 합니다. 다만, 204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을,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신탁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

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자산배분 전략 수행에 따른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국내 채권 관련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설정하여 주식 및 채권 관련 자산의 투자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해외주식(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중소형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경우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경제상황 변동의 악재 등에 더 민감하고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어, 가격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 손실이 대형주 투자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자산 투자신탁 투자위험	일반적으로 혼합자산 투자신탁은 국내외 다양한 증권, 특별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전략에 따라 지역간 또는 자산의 종류간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에 따라 특정 지역/자산/섹터등에 집중투자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변동성 증가, 수익률 저하 등 본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별 또는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이 투자위험을 반드시 낮춰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시까지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과표 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ETF) 투자에 따른 추적오차 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 은 그 추종지수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집합투자증권(ETF)에서 발생하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 성격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간접 투자로 인한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세계 각국(신흥시장 포함)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국가의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주식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DR)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해외주식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 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1)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지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기타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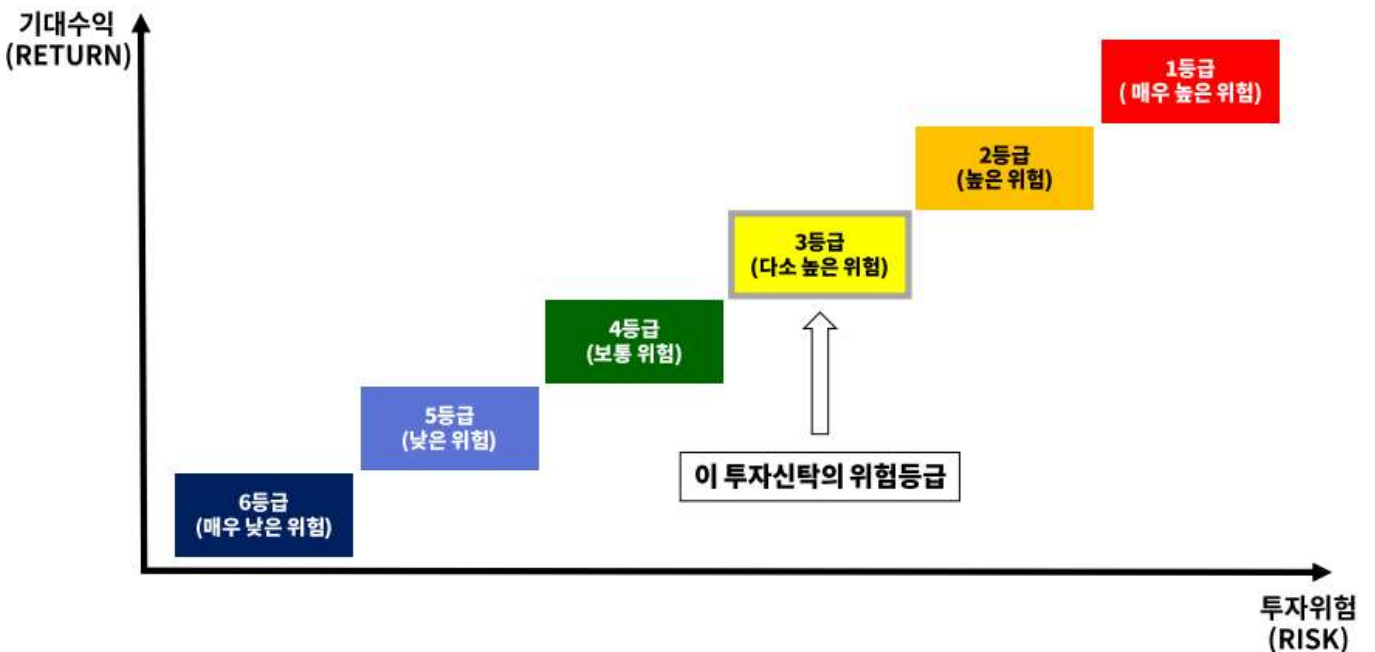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 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 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자보다 더 높습니다.
해외납세의무자 관련 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본토주식 매매차익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중국과세당국의 이러한 결정 이후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설정일 현재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과세에 대비한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중국과세당국이 과세를 결정하게 되면 투자신탁의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 또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 내 유보 및 적립금은 중국과세당국의 결정 및 해당 시점의 감독법규 준수와 수익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게 되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주식 관련 ETF,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주식 관련 ETF, 국내 채권 등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등급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이 투자위험 등급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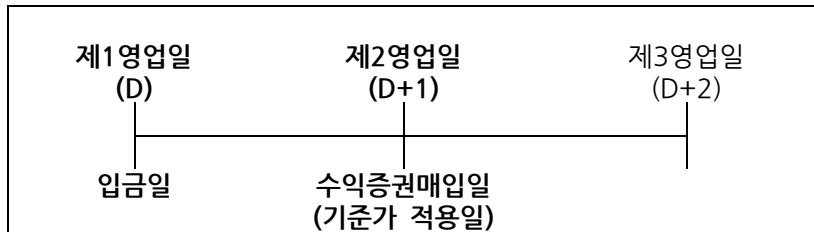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 제10조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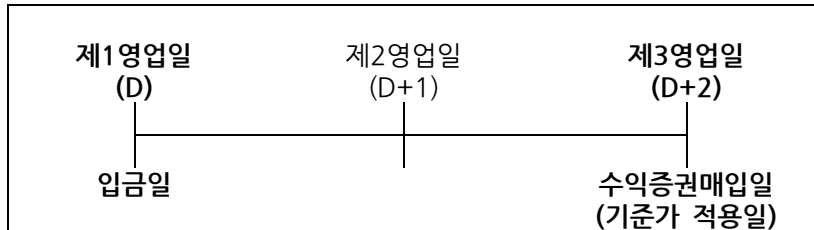
	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전용이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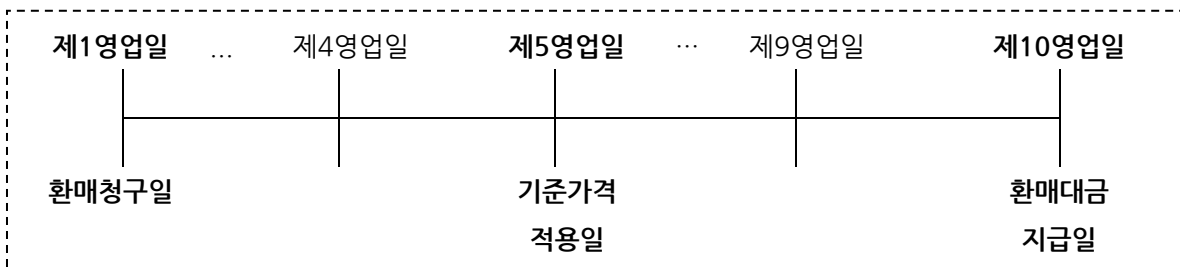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③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 5시]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

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 이전(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8영업일 이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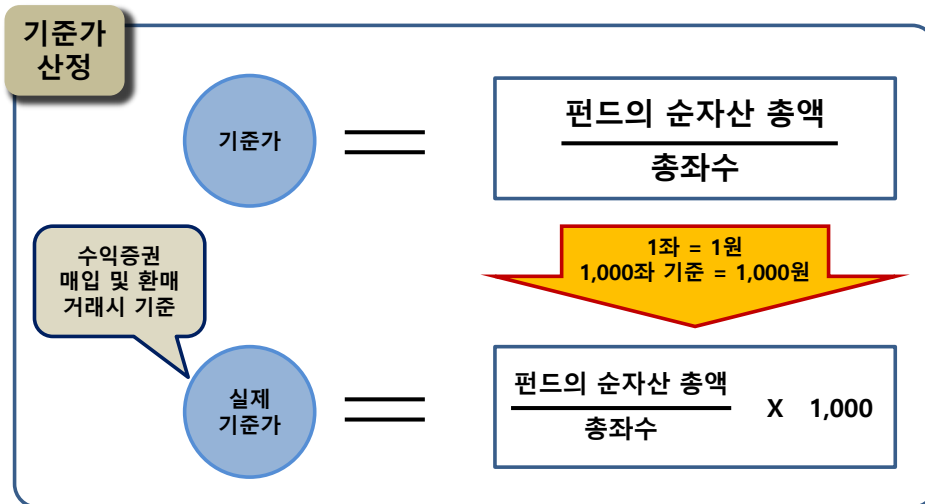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8% 이내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4%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 전용임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	-	-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대금의 0.15%이내 주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전용이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납입금액의 0.8%이내(A클래스), 납입금액의 0.4%이내(Ae클래스)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주2) 수수료율 차등화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주3) 환매대금의 0.15%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수탁 회사 보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 비용	증권 거래비 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15	0.20	0.03	0.02	0.40	-	0.40	0.910	0.40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15	0.10	0.03	0.02	0.30	-	0.30	0.650	0.3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15	0.50	0.03	0.02	0.70	-	0.70	1.040	0.7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15	0.25	0.03	0.02	0.45	-	0.45	0.730	0.4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0.15	0.45	0.03	0.02	0.65	-	0.65	-	0.6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0.15	0.22	0.03	0.02	0.42	-	0.42	-	0.4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15	0.40	0.03	0.02	0.60	-	0.60	-	0.6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0.15	0.20	0.03	0.02	0.40	-	0.40	-	0.4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	0.15	0.10	0.03	0.02	0.30	-	0.30	-	0.3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15	0.03	0.03	0.02	0.23	-	0.23	-	0.23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15	0.09	0.03	0.02	0.29	-	0.29	-	0.29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15	0.07	0.03	0.02	0.27	-	0.27	-	0.2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0.15	0.06	0.03	0.02	0.26	-	0.26	-	0.26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값으로, 신규설정 1년 경과 후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될 예정입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은 합리적인 비용 추정이 어려울 수 있어, 증권거래비용 등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펀드 총보수를 제외한 기타 발생 가능한 비용의 하위 구성 내역

- ① 기타비용 :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위원회보수, 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후원기금), 기타비용(해외거래에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거래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등), 대차거래비용(대차중개지급수수료 등)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거래비용	신규 설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금융비용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금융비용	신규 설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④ 상기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계산이 가능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0	163	208	304	59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0	163	208	304	591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0	103	136	209	42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0	103	136	209	4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7	226	396	90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2	147	226	396	9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95	145	255	58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46	95	145	255	5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7	137	210	368	83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7	137	210	368	8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3	88	136	238	54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43	88	136	238	5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	126	194	340	77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2	126	194	340	7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1	84	129	227	51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41	84	129	227	5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O)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1	63	97	170	38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31	63	97	170	3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	48	74	130	29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	48	74	130	29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	61	94	164	37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30	61	94	164	3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	57	87	153	34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8	57	87	153	3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R)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	55	84	147	33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7	55	84	147	33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증권거래비용은 제외)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판매수수료율은 A1클래스 0.8%, Ae클래스 0.4%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A와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 6개월, 종류 Ae와 Ce는 약 3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 S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2016년 9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주식 또는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종류 C-P1, C-Pe1, S-P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2, C-Pe2, O, S-R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마이더스 미소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며, 투자대상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하고, 국내채권 및 어음 등에의 투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70% 이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
⑤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 이내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	수익증권 등	40% 이하(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	증권의 대여(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⑧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⑨	증권의 차입(주2)	20% 이하	상기의 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①~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⑤~⑨,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 	

	<p>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p>	<p>-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투자제한</p>	<p>-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p>-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며,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의 중소형주에 대한 정의는 'KOSPI 시가총액 100 위까지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KOSDAQ 종목 전체'로 합니다. (단, KOSPI 시가총액 순위는 최초편입일 증가기준)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한 투자** :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만의 글로벌 트렌드 및 업종동향 분석 틀을 활용하여 글로벌 성장 트렌드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할 것입니다.
- ② **저성장시대 구조적 성장 중소기업** :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기 위해, 독점적 지배력과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이익성장을 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내수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해외시장에서의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위주로 투자할 것입니다.
- ③ **턴어라운드 국면진입 중소기업** : 최악의 상황이 지나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하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PSR)이 낮아, 마진을 회복시 큰 폭의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고, 높은 기술력 혹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위주로 투자할 것입니다.
- ④ **저평가된 우량 중소기업** : 보유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에 투자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PBR)이 낮아,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부동산 및 자회사 등 보유자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나) 채권 투자전략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 제외)와 같은 우량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다) 파생상품 투자전략

회사는 투자한 유가증권의 위험관리수단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2) 비교지수: KOSPI 중형주 지수*75% + KOSPI 소형주 지수*25%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므로 중소형지수 대비 성과의 비교를 위해서 상기의 비교지수로 활용할 예정이며, 일반 주식시장과는 상이한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변경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신탁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식들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다만, 해외성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취득시 신용등급 A0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법 제5조제항 및 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 환매조건부 매수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2) 수익증권 등,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지방채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p>○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p>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	

행령 제86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제외한 상기 투자 제한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① 기본 운용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식들을 발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대상 국가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이며,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 유통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주식예탁증서(DR) 포함)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투자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투자대상 주식을 선별합니다.

- **성장 잠재력(Growth):** 아시아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수혜주를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타 지역 대비 풍부한 인구와 중산층 증가로 인하여 소득 및 소비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할 것입니다.
- **고령화(Aging):**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고령화 현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에 주목합니다. 일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빠르게 고령화 추세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는 투자기회를 활용할 것입니다.
- **합리적 가격(Price):** 성장 잠재력이 있고,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인 국가와 주식에 투자합니다.

② 세부 운용전략

-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장기 접근 방식을 통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 시장의 단기적인 유행과 단기적인 기회를 따라가지 않고, 끊임없는 리서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실현 가능한 미래의 장기 성장성을 감안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보유한 종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순히 시장을 따르는 소극적인 인덱스 투자가 아닌,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투자대상	내용설명(주1)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IT강국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 및 AI 관련 투자 수혜 기대 ■ 정부 주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 ■ 주요 산업: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자동차, 조선, 방산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5천만명	\$ 35,570	4.3	2.6	1.4	632	643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시 활성화 및 국부펀드 개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소비심리 개선 유도 ■ 실물 지표 바닥 구간 통과, 정책을 통한 제조업 공급 개혁 기대감 ■ 주요 산업: AI, 인터넷, 전기차, 소비재, 헬스케어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14.1억명	\$ 12,174	8.4	3.0	5.4	3,422	2,564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1등 기업들의 본토-홍콩 동시 상장을 통한 IPO시장 활성화 기대 ■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 주요 산업: TMT, 금융, 서비스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7백만명	\$ 43,548	6.4	-3.5	3.2	576	656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자본 효율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지속 ■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강세와 금리 회복에 따른 내수주 강세 병행 ■ 주요 산업: 반도체, 서비스, IT, 게임, 유통, 기계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	수입(십억 ¥)
약 1.2억명	\$ 37,079	2.6	1.0	1.5	100,881	110,180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아세안 허브로서의 위치 ■ 고배당 리츠 상장 매력 ■ 주요 산업: 금융, 정보통신, 산업재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6백만명	\$ 65,422	8.9	3.6	1.8	475	423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 제조기반 및 친환경 전환 수혜 기대 ■ 주요 산업: 에너지, 금융, 소재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3천만명	\$ 11,691	3.3	8.7	3.6	313	266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유연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제도 개선 본격화 ■ 니켈 등 자원 산업에서 후방 산업화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주요 산업: 소재, 금융, 소비재, 디지털 경제, 인프라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2.8억명	\$ 4,248	3.7	5.3	5.0	259	222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중형 내수시장으로서의 전략적 위상 ■ 지리적 연계성과 정치 리스크 완화로 투자환경 점진적 개선 ■ 주요 산업: 소비재, 식품, 금융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7천만명	\$ 6,385	1.5	2.6	2.0	280	292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대체지로서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혜국 ■ 투자 매력 높지만 구조적 과제도 병존 ■ 소비재, IT·소프트웨어, 제약·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14.3억명	\$ 2,239	9.1	7.2	9.2	431	672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미·일과의 기술 협력 확대 ■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 ■ 주요 산업: 전기전자 (IT), 금융, 통신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2023년 대외무역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2천만명	\$ 32,442	6.5	2.6	1.1	415	351

주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자료 출처 및 기준

- 인구, 1인당 GDP: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2023년 기준
- GDP성장률: 세계은행(<https://www.worldbank.org/en/home>)
- 대외무역 규모: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2023년 기준
- 대만 자료는 대만 통계청(<https://nstatdb.dgbas.gov.tw/dgbasall/webMain.aspx?k=engmain>) 참조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 국가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모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중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는 투자신탁과 실행하지 않는 투자신탁이 존재하므로 고객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4)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KRW) X 100%

※ 비교지수 선정사유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 및 발표하는 MSCI AC Asia USD Index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MSCI AC Asia USD Index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여 원화(KRW)로 표시된 지수를 비교지수로 활용합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주식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신탁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마이다스 K200 인덱스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주가지수인 KOSPI20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주식 및 주식관련장 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60% 이 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주식관련장내파생 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단,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40% 이하로 제한)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2-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를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 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 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 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7. 증권의 대여(주1)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채권 매 도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 도하는 경우를 말함
9. 증권의 차입(주2)	20% 이하	상기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에 한함
11.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1, 3, 4, 5, 6에 대하여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투자대상 1~6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7, 8, 9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 투자대상 3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도 운	

	<p>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p>	
2.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p>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 246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동일법인 투자	3.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3.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제한 2~12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주가지수인 KOSPI200 지수를 추적하면서, 제한된 리스크 범위 내에서 검증된 퀀트액티브(액티브퀀트) 전략 등을 통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전략 실행시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을 통해 운용의 효율화를 추구합니다. 초과수익 전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식, 주가 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며, 제한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주식선물, 코스닥선물 등도 투자합니다.
- (2) 계량 모델(Quant Model)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인핸스드(Enhanced) 인덱스 전략 추구
 - 팩터(Factor) 투자 : 가치(Value), 수익성(Profitability), 성장(Momentum) 등의 팩터를 조합하여 종목 선정
- (3) 기업 탐방 등의 전통적인 리서치를 통한 종목 선정
- (4) 지수 구성종목 변경 예상 종목, 분할/합병/증자/공개매수, 블록딜(Block Deal, 대량매매), 공모주 등 주요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따른 매매
- (5) 통계적 기반의 선물 트레이딩, 보통주/우선주 등의 페어트레이딩
- (6)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매수하고, 높은 것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 추구의 전략
- (7) 보유 주식 대여를 통한 이자 수취
- (8) 손실이 제한적인 포지션 위주로 옵션매매 등

※ 비교지수: KOSPI200 지수 x 100%

- 비교지수 선정 사유: KOSPI200 지수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200 개 주식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므로 이를 참고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 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파생형 투자신탁으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

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

- (가) 추적오차 연 4% 이하가 되도록 관리 추구하며, 산출시 미수배당 발생일 제외 기법 등을 활용
- (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 (다) 추적오차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도달시 한도 이내가 되도록 리밸런싱 실시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 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신탁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4) 마이더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 관련 ETF 등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 국내·외 주식 관련 국내 및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주로 투자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분산투자 효과를 위해 국가, 스타일, 테마 등을 대표하는 각 자산의 가격흐름을 추종하는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에 거래량, 시가총액, 비용 등 정량적 요인과 운용의 안정성, 투명성 등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이므로 정성적인 요인의 분석은 공시된 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정량적인 요인 분석은 블룸버그 등 금융정보제공 인프라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집합투자증권	56%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지분증권	44%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채권	5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5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5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5% 이하(헤지 또는 헤지 외 목적)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증권의 대여(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차입(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 4.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2)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 유예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상기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법 제234조	최초설정 일로부터

	<p>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p>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p>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p>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파생상품 매매	<p>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p>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p>
	<p>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계열회사 발행 주식	<p>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p>	
후순위채권	<p>집합투자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 상기 투자 제한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단기대출, 계열회사 발행 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제외)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투자 필요성 실사 (Due Diligence), 선정 프로세스 등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설립국가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투자비중 회계감사 실시 여부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상세 사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신 후에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절차에 따라 이미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정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과 ETF.com (<https://etf.com>)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ETF 등 집합투자증권 투자전략

① 투자전략 개요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관련 ETF 등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6%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관련 국내외 ETF 를 활용한 초분산투자를 추구합니다.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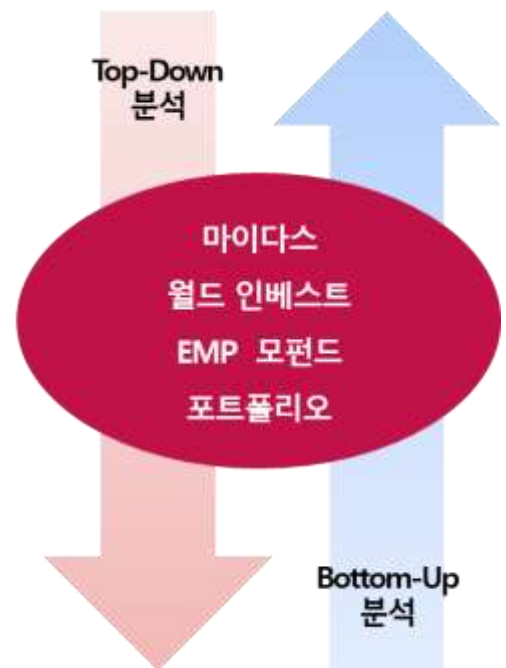
경제 지표를 통해 경기국면 판단 ◦ 최적의 전략 MIX 구성

- 판단 지표 예시 :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산업생산, 소매/고용지표, 선행지수, 통화증가율, 정부정책 등
-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 1) 매크로 전략, 2) 고배당 전략, 3) 구조적 성장 전략

필요시 시장 리스크 방어를 위한 변동성 모니터링 및 헷지 전략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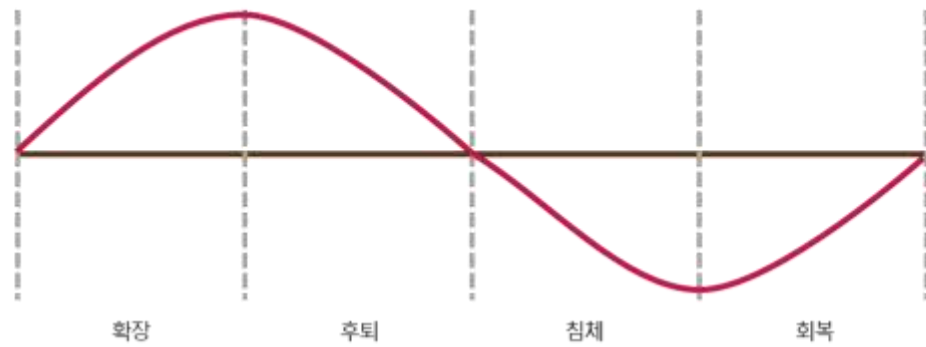
기업분석 방식 접목하여 투자 ETF 선별 및 Top Pick 종목 확인

- 판단 지표 : 실적 추정치, 밸류에이션, 기술적 분석, 산업 트렌드, 유동성 등
- 각각의 전략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ETF를 선별 하기 위해 ETF별 주요 구성 종목 및 비중 확인



[경기 국면별 전략 조합 예시]

경기국면



추천 전략 M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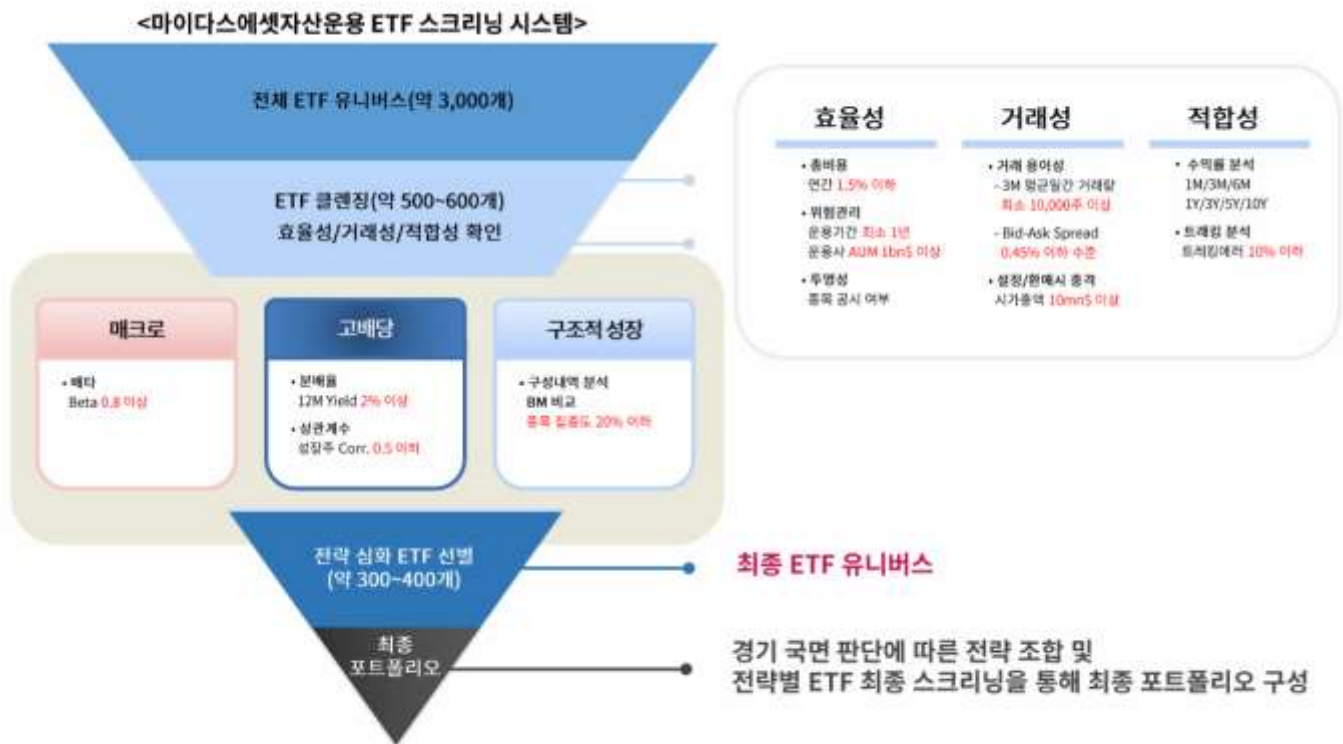
마이다스에셋



② 투자전략 세부 구분

전략 구분	내용	투자 대상 ETF
매크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국가 및 산업/섹터의 경기 사이클 분석을 통해 회복 및 확장기에 진입한 유망 투자대상 선정 퀀터멘탈(Quantamental) 모델을 기반으로 경기 국면 판단하며, 스코어링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섹터 로테이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주식형 ETF 신흥국 주식형 ETF 섹터 ETF 기타 ETF (원자재 등)
고배당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배당 자산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컴과 자본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변동성 제어 국공채 대비 높은 분배율의 ETF가 유망 투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배당 ETF 우선주 ETF REITS ETF
구조적 성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테마 및 트렌드를 포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 유사한 테마의 다양한 ETF가 존재하기에 바텀업 기업분석 방식을 접목하여 ETF 선별(구성 종목 내 Top Picks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테마 ETF Cash Cow ETF 대체자산 ETF (탄소배출권 등)

③ 투자대상 ETF 스크리닝 프로세스



④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모펀드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전략	펀드명	운용사	투자대상 및 테마	설정일	상장 국가	운용 규모 (십억\$)	투자 비중 (예시)
매크	마이다스 일본테크액티브 ETF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일본 주식	2024-08-02	한국	0.006	2.88
	iShares US Medical Device	BlackRock Fund	미국 의료기기	2014-11-18	미국	4.9	2.98

로	ETF	Advisors	섹터 주식				
	SPDR S&P 500 ETF TRUST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S&P 500 주식	2014-10-09	미국	603.0	22.00
	SPDR Healthcare Select Sector Fund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헬스케어 섹터 주식	2014-10-08	미국	40.2	5.96
	SPDR Consumer Staples Select Sector Fund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경기소비재 섹터 주식	2014-11-18	미국	17.1	6.77
	SPDR Financial Select Sector Fund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금융 섹터 주식	2014-10-08	미국	44.8	6.97
	SPDR Industrial Select Sector Fund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산업재 섹터 주식	2014-10-08	미국	19.8	4.41
	VANGUARD UTILITIES ETF	Vanguard	미국 유틸리티 섹터 주식	2014-11-18	미국	6.8	4.67
	iShares Residential and Multisector Real Estate ETF	BlackRock Fund Advisors	미국 부동산 섹터 주식	2014-11-18	미국	1.2	15.45
	Vanguard Mega Cap Growth ETF	Vanguard	미국 빅테크 주식	2014-11-17	미국	23.7	10.64
고배당	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	BlackRock Fund Advisors	미국 소프트웨어 섹터 주식	2014-11-18	미국	7.0	3.26
	SPDR S&P BANK ETF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은행 섹터 주식	2014-11-18	미국	2.1	2.43
구조적성장	ISHARES MSCI India ETF	BlackRock Fund Advisors	인도 주식	2014-11-17	미국	10.8	3.10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Fund	First Trust Advisors	글로벌 전력 섹터 주식	2014-11-18	미국	0.6	3.73
	VanEck Semiconductor ETF	VanEck	미국 반도체 섹터 주식	2011-12-20	미국	24.8	4.77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2024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로서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역의 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설정지 국가	주요 투자대상자산	벤치마크
마이더스 일본테크액티브 ETF	한국	일본 주식	Solactive Japan Tech Top 30 CR JPY
iShares US Medical Device ETF	미국	미국 의료기기 섹터 주식	Dow Jones U.S. Select Medical Equipment TR
SPDR S&P 500 ETF TRUST	미국	미국 S&P 500 주식	S&P 500 TR
SPDR Healthcare Select Sector Fund	미국	미국 헬스케어 섹터 주식	Health Care Select Sector TR
SPDR Consumer Staples Select Sector Fund	미국	미국 경기소비재 섹터 주식	Consumer Staples Select Sector CR USD
SPDR Financial Select Sector Fund	미국	미국 금융 섹터 주 식	Financial Select Sector TR
SPDR Industrial Select Sector Fund	미국	미국 산업재 섹터 주식	Industrial Select Sector TR USD
VANGUARD UTILITIES ETF	미국	미국 유틸리티 섹터 주식	MSCI US IMI/Utilities 25/50 TR USD
iShares Residential and Multisector Real Estate ETF	미국	미국 부동산 섹터 주식	FTSE NAREIT All Residential Capped TR
Vanguard Mega Cap Growth ETF	미국	미국 빅테크 주식	CRSP US Mega Cap Growth Index
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	미국	미국 소프트웨어 섹터 주식	S&P North American Expanded Tech Software TR USD
SPDR S&P BANK ETF	미국	미국 은행 섹터 주 식	S&P Banks Select Industry TR USD
ISHARES MSCI India ETF	미국	인도 주식	MSCI India NR US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Fund	미국	글로벌 전력 섹터 주식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TR USD
VanEck Semiconductor ETF	미국	미국 반도체 섹터 주식	MVIS US Listed Semiconductor 25 Index

※ 상기 피집합투자기구의 설정지 국가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나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과 ETF.com(<https://www.etf.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2024년 10월 25일 작성기준 시점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실제 운용시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투자대상 국가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국가	내용설명주1)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형 산업이 GDP의 70% 차지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 ■ 첨단 제조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 주요 산업 : IT,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약 3.3억명	\$ 80,300	5.8	1.9	2.9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부분이 GDP의 79%를 차지하는 서비스 중심형 산업구조 ■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과 전통적인 산업 모두 큰 영향력 행사 ■ 주요 산업 : 서비스, 생산, 건설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약 6.8천만명	\$ 47,800	8.6	4.8	0.3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비중의 농,임,어업의 급격한 감소와 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세 ■ EC 12개국 중에서 최대의 농업생산. 중요 식료품 자급자족 ■ 주요 산업 : 항공, 명품패션, 산업용 IT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약 6.8천만명	\$ 45,070	6.9	2.6	0.9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부분이 GDP의 70%를 차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경제 성장 ■ 자동차, 의약품 중심으로 수출 강국 ■ 주요 산업 : 자동차, 기계 장비, 화학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약 8.4천만명	\$ 53,970	3.7	1.4	-0.3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진한 가계소비력으로 GDP 대비 내수 비중 최하위. 노동 집약적 제조업 발전 ■ 제조, 정보통신, 소재, 바이오 등 미래산업 집중 자원 추진 ■ 주요 산업 : 섬유, 선박, 자동차 부품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약 14.1억명	\$ 13,400	8.4	3.0	5.2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소비와 투자가 GDP의 74%에 달하는 내수 중심의 경제. ■ 제조업 중심 국가. 친환경 에너지 전략 산업 육성. 식량 자급률 가장 낮음 ■ 주요 산업 : 자동차, 기계, 전자 				
	인구	1인당	GDP 성장률(%)		

		국민총소득	2021년	2022년	2023년
	약 1.2억명	\$ 39,030	2.6	1.0	1.7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이 GDP의 33%를 차지하는 첨단기술 제조업 중심 경제, ■ 반도체 메모리 산업 기반 성장 ■ 6대 핵심 전략 사업: IoT·AI, 정보 보안, 바이오·의료 기술, 방위·항공 우주, 신재생에너지, 민생 필수품 ■ 주요 산업: 반도체, IT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약 2.3천만명	\$ 33,365	6.6	2.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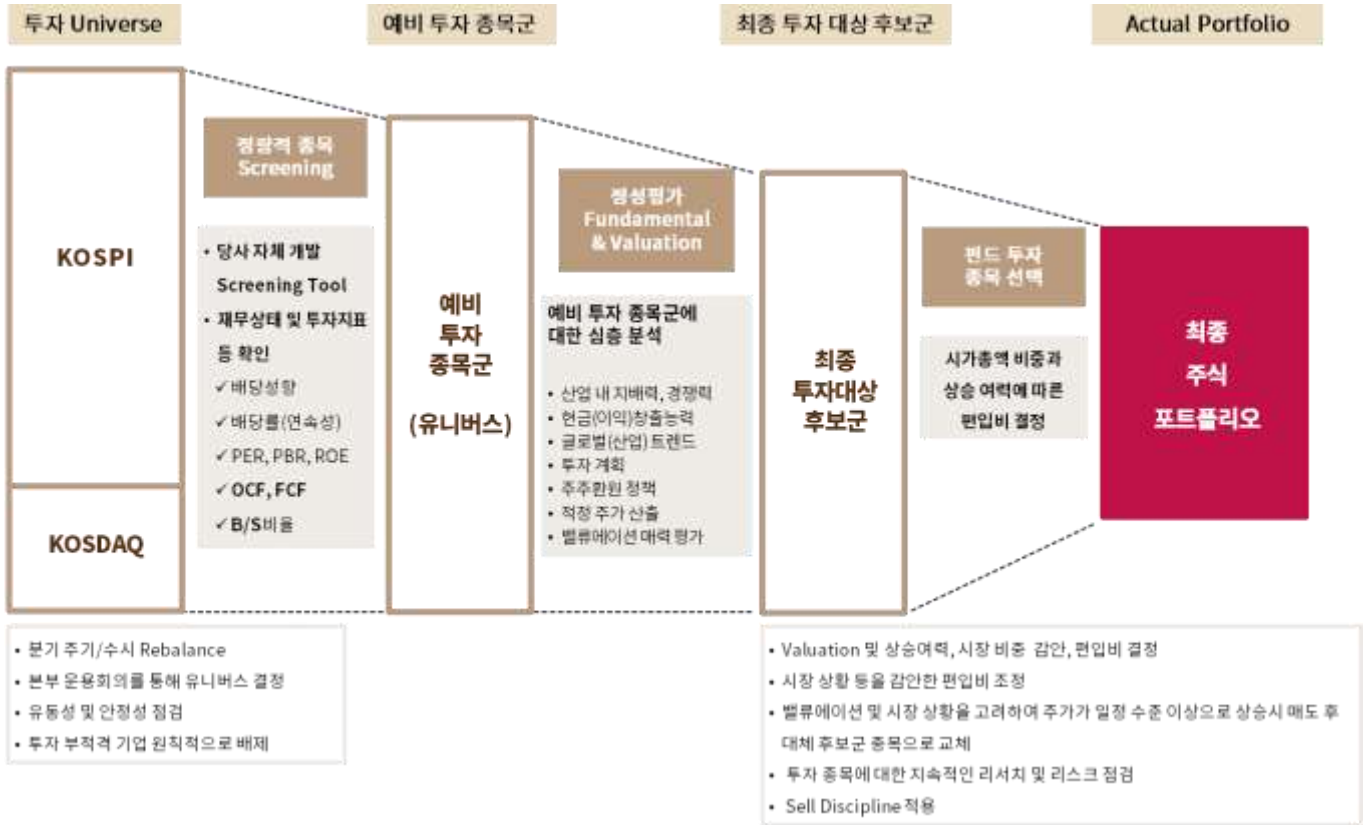
주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자료 출처 및 기준

-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2023년 기준
- GDP성장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2023년 기준
- 대만 자료는 대만 통계청(<https://nstatdb.dgbas.gov.tw/dgbasall/webMain.aspx?k=engmain>) 참조

2) 주식 투자전략

집합투자재산의 44%이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프로세스]

3)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AC World Index

MSCI AC World Index 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산출하며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대형주/중형주로 구성된 지수로 MSCI World Index 및 MSCI Emerging Markets Index 를 포괄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전세계 주식 관련 ETF 등 집합투자증권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MSCI AC World Index 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상기의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 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및 투자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나 환율변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비상 상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 단계별 비상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① 비상상황 가능성 인지 단계(1 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상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 발생 원인 파악, 환매 자금 마련 스케줄 점검 등 시행
- ② 비상상황 우려 단계(2 단계): 1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시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대응방안 및 비상계획 마련
- ③ 비상상황 발생 단계(3 단계): 2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 혹은 1 단계 또는 2 단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비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매연기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가 방안 강구

이후에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화 과정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가격이 현저히 불리하여 잔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하게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치 강구할 계획입니다(환매연기 여부 결정, 관련 부서 통지, 판매회사 협의, 대고객 안내, 수익자총회 등).

3)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위험 및 관리방안

본 펀드는 글로벌(국내 포함)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리츠(REITs)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본 펀드는 글로벌 경기 국면, 대상 국가의 정치 및 경제상황, 증권시장에 영향을 받으며, 투자 종목의 매각 불가, 거래량 부족,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대량환매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또는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동 펀드는 미국, 유럽, 신흥국 등 전세계 자산에 분산투자 할 예정이며, 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 ETF 를 편입할 예정으로 장내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투자대상 종목 및 투자비중은 대상 종목의 거래량, 설정규모 등 정량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경우 정기 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 사항 등을 점검하여 유동성 위험 인지 시, 이에 대응할 계획이며 규약에 따른 종목별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환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 직·간접적 투자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투자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마이다스 글로벌 블루칩 배당 인컴 혼합자산 모투자신탁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달러 인컴 자산(미국 배당주와 우선주, 배당 및 채권 관련 ETF) 및 글로벌 리츠(REITs)를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10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2. 채권	10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집합투자증권 등	10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 이내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7. 증권의 대여(주1)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9. 증권의 차입(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11.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1, 2, 3, 4, 5에 대하여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7, 8, 9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파생상품 매매	3.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7.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8.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 투자제한 2, 3, 5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달러 인컴 자산 및 글로벌 리츠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인컴 자산

- 일정 기간 마다 배당수익 또는 이자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자산을 의미
- 인컴 자산의 종류로는 채권, 고배당주, 리츠, 인프라 펀드, 우선주 및 관련 ETF 등이 있음

➤ 인컴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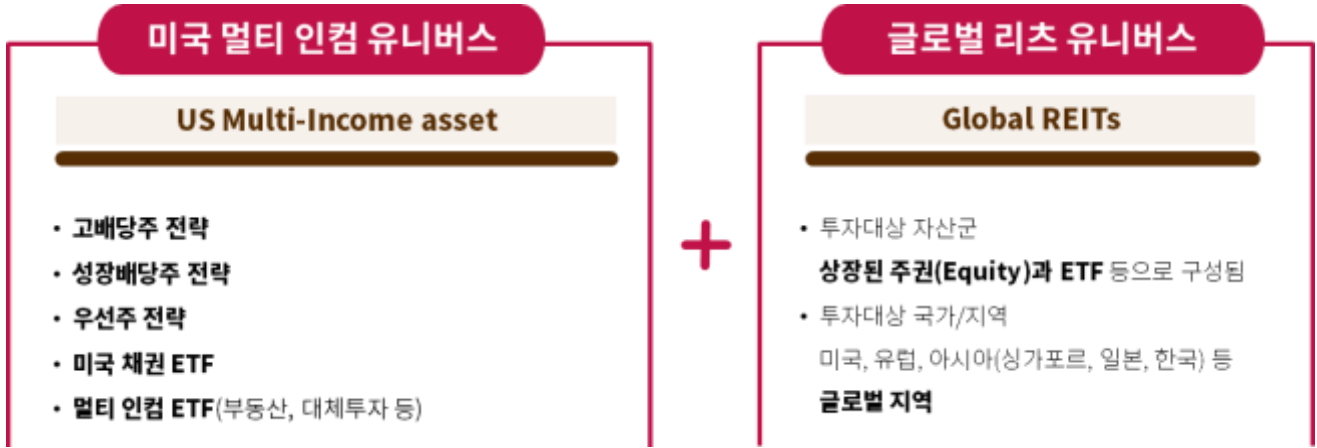
- 배당과 이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꾸준한 인컴 흐름을 창출하는 펀드
- 주가변동에 따른 펀드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가격 및 인컴 창출이 펀드의 주 목적임

➤ 투자 유니버스

- 전 세계적으로 가장 퀄리티가 높고 투자풀이 다양한 미국 달러 인컴자산을 중점 타깃으로 함
-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리츠를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합니다.

➤ 주요 투자전략

- 미국 멀티인컴 자산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 이익성장, 글로벌 성장 산업에 부합하는 인컴 성장주에 투자해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함께 추구하며, 배당금 재투자를 통해 총 수익(Total Return)을 끌어올리는 전략
-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글로벌 리츠에 투자해 초과 수익과 함께 포트폴리오 변동성 축소를 추구하는 전략



➤ 투자 프로세스

- 투자 유니버스 선정
 - 투자할만한 종목들의 리스트인 투자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단계
 - 주요 인컴자산(고배당주, 우선주, 리츠 등)의 종류별로 각각의 범주에 적합한 계량 지표들(변동성, 기업 실적 및 주가평가 관련지표 등)을 적용하여 투자대상 후보군을 선정
 - 인컴자산들의 평균적인 배당 주기인 분기 단위로 유니버스 조정 및 재구성

계량 지표	목적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이 낮을수록 안정적 인컴 추구 가능
펀더멘탈	인컴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 체크를 통해 배당의 연속성, 성장성 등 확인
밸류에이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위험조정 성과를 추구 가능

- 인컴 자산 배분(Top-down)
 - 거시 경제의 호황-불황 국면 판단을 통하여 자산 간 편입비 조정
 - 호황 국면 진입 판단시 주식 인컴 자산(고배당주, 우선주)의 편입비를 늘리며, 반대로 불황 국면 진입 판단시 채권형 인컴자산(채권관련 ETF) 등의 편입비를 늘이는 전략 사용
 - 투자 자산 내 리츠의 편입비는 통상 30% 이하로 유지
- 포트폴리오 구성(Bottom-up)
 - 이미 구축된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리서치와 퀀터멘탈(Quantamental: 계량분석(Quant)을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 가치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법)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당(인컴) 수익이 양호하거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종목에 선별 투자
 - 글로벌 퀀터멘탈 시스템과 마이다스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 포트폴리오 운용

- 경기 국면에 따른 자산배분 선행
- 개별 자산 고유의 배당 표준편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배당수익률의 변화에 따라 개별 자산을 매매하여, 적절한 인컴 수익을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 차익의 실현을 추구
- 미국 인컴자산의 상대적으로 빈번한 배당주기를 활용하는 배당 재투자 전략과 함께,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 차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매매전략으로 총수익률을 제고

- 2) 투자신탁의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적합한 비교지수가 없으므로 별도의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ETF, 리츠 등에 투자하는 혼합자산 투자신탁으로 주식, ETF, 리츠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나,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중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는 자투자신탁과 실행하지 않는 자투자신탁이 존재하므로 고객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달러 인컴 자산 및 글로벌 리츠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등락 및 인컴 수익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 요인입니다.

(6)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2-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4. 수익증권 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5. 증권의 대여(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6.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8. 증권의 차입(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10.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1, 2, 3, 4에 대하여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5, 7, 8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행위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매매	3.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6.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 투자제한 2, 3, 5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1)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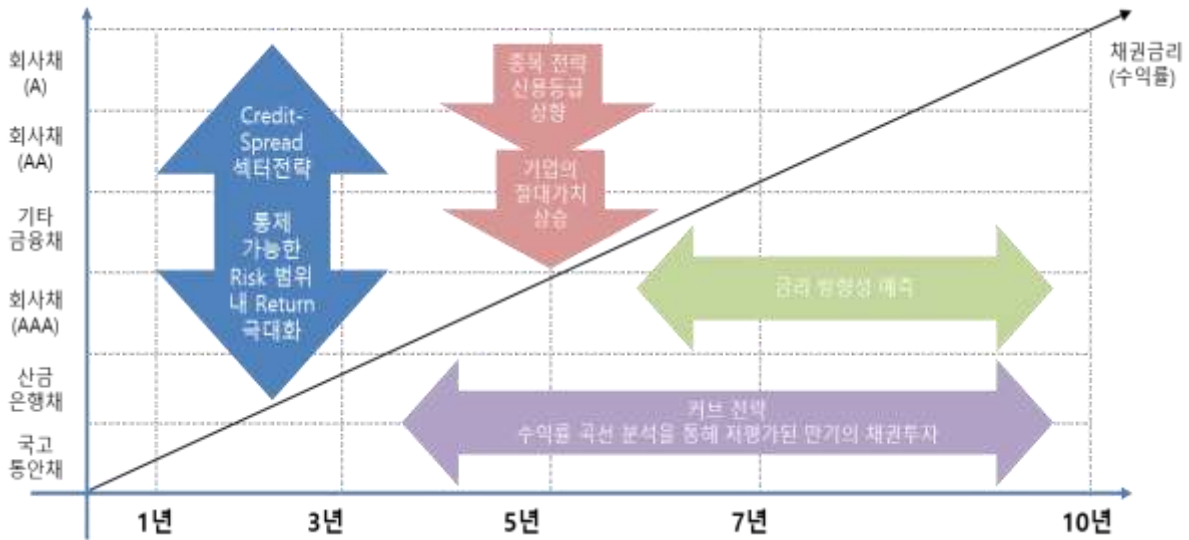
가) 채권 투자전략: 국고채/지방채/특수채/우량회사채(신용등급 A- 이상) 투자로 시중금리 이상의 투자성과를 안정적으로 추구

- 듀레이션 전략: 금리전망에 따른 듀레이션 조절을 통한 초과수익 추구

(통상 기준 듀레이션 1.7년±0.5년 범위 내 듀레이션 조절)

- 회사채 투자: A-등급 이상 회사채 편입으로 이자수익 증대

- 커브(Curve) 전략: 저평가된 잔존만기 구간대의 채권 편입, 가격상승 차익 추구
- 개별종목 신용등급 상향으로 인한 가격상승 차익 추구



나) 파생상품 투자전략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보유자산의 위험 헤지 또는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의 비교지수

※ **비교지수: KIS 중단기지수(1-2Y)*55% + KIS 중기지수(2-3Y)*40% + Call 지수*5%**

- KIS 종합채권지수: KIS 채권평가가 발표하는 종합채권지수로서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리나라 채권들로 구성됩니다. 구성 섹터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동안증권, 은행채, 기타금융채, 회사채, ABS 를 포함합니다.
- KIS 중단기지수(1-2Y): KIS 종합채권지수의 하위지수로, 만기가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채권으로 구성됩니다.
- KIS 중기지수(2-3Y): KIS 종합채권지수의 하위지수로, 만기가 2년 초과 ~ 3년 이하인 채권으로 구성됩니다.
- Call 지수: 콜금리 수익률에 따른 지수로 KIS 채권평가가 발표합니다.

▶ 상기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이 투자신탁이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는 운용의 특성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3)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채권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채권,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요인	위험관리방안
신용채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당사의 회사채 투자 유니버스 내 종목에 한정하여 투자 • 투자 중인 신용채권의 경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관리 • 월 단위 투자위원회 개최, 투자 유니버스 점검 후 승인
유동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유동성 제약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비지표, 저신용채의 편입한도를 관리 • 신용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유동성이 강화되는 종목 지속 발굴
이자율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유동성 높은 국채선물을 활용하여 위험회피 • 시장상황에 맞는 합리적 듀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탐색
운용 관련 규정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Compliance Check 를 통해 주문 입력시 위반여부 판단 • 운용전략 수립 시 운용규정 확인을 기본으로 전략 수립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채권으로부터의 이자 수익 및 채권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7) 마이다스 글로벌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에 기반한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취득시 신용등급 A0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 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 법 제5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법 제5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수익증권 등	40% 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 환매조건부 매수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2) 수익증권 등,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동일법인 투자	3.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3.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제한 2~13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① 기본 운용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 등이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에 기반한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 외에 관련한 글로벌 ETF(상장지수투자신탁)를 40% 미만으로 활용하여 투자 대상을 확장하고 분산 투자를 추구합니다.

② 세부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상장 주식 중 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관련 글로벌 ETF(상장지수투자신탁)에도 투자하여 분산투자 효과 및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장기 접근 방식을 통해 향후 이익전망이 매력적인 성장주를 선별하여 투자
- 균형 있는 섹터/국가 배분으로 변동성은 낮추면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추구
- GARP(Growth At Reasonable Price) 투자 전략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격과 내재가치를 비교하여, 현재 저평가되었으나 실현 가능한 미래의 장기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투자 테마 예시>

구분	내용
인구구조/ 라이프스타일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환경·라이프 스타일(건강/소비/커뮤니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 - 관련 키워드: 인구 고령화, 수명 연장, 의료 혁신, 삶의 질 향상, 수요 변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기술	미래성장동력인 4차산업 분야에서 생활/업무 방식의 디지털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관련 키워드: AI/빅데이터, 커넥티비티, 메타버스(Metaverse), 반도체, 사이버 보안, 로봇틱스/자동화, 클라우드 등
환경	기후변화, 자원부족, 식량 공급 등 인구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관련 키워드: 지속가능한 삶, 기후 솔루션, 클린어스(Clean Earth), 전기차, 폐자원 순환, 저탄소 경제 등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테마에 부합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나, 이러한 투자 테마는 거시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관련 글로벌 ETF 상품을 적극 활용해 투자 대상 확장 및 분산투자
- ✓ 종목 이외 40% 범위 내에서 글로벌 ETF 상품을 적극 활용, 투자 대상 다양화 및 수익률 극대화 효과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관리

이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모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중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는 자투자신탁과 실행하지 않는 자투자신탁이 존재하므로 고객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4)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에 기반한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이러한 운용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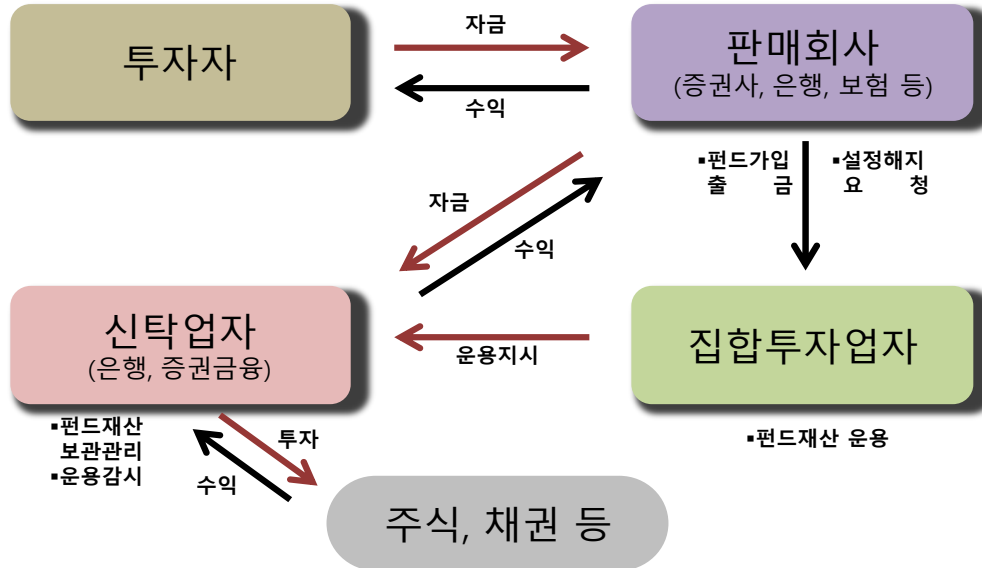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신탁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신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연락처 : 02-3787-3500,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억원)
자본금	100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헌 (10%), 이지혜(특수관계인 포함) (7.6%)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5.3.31	'24.3.31	항 목	'25.3.31	'24.3.31
현금및예치금	411	321	영업수익	465	444
유가증권	723	676	영업비용	252	243
유형자산	408	423	영업이익	212	200
기타자산	76	88	영업외수익	9	21
자산총계	1,618	1,507	영업외비용	4	1
유동부채	54	5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14	220
고정부채	-	-	법인세비용	46	39
부채총계	54	51	당기순이익	168	181
자본금	100	100			
자본조정	-46	-48			
잉여금	1,509	1,40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1			
자본총계	1,564	1,456			

라. 운용자산 규모

[2025.10.31 현재, 단위: 억원, 순자산 기준]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140,067	6,842	127,457	365	1,420	4,156	-	3,820	-	284,128

※ 일임자산을 포함한 전체 운용자산 규모로,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연락처	1588-1111
홈페이지	www.hana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연락처	02-6714-4600
홈페이지	http://www.hanai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연락처	02-399-3350	02-3215-1400	02-398-39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⑦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⑨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생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반대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3) 및 4)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

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대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봉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 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이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주식	1. 평가 항목 기업방문 및 당사 내방 설명회 주선 능력, 투자정보, 매매 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자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매체결(속도 및 정확성) 능력의 경우 마이너스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정 방법 포트폴리오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전원이 매월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3. 회사 경영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등은 매매를 대가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	---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평가 항목 및 선정 기준은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펀드명	마이다스 기본 TDF 204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투자주체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투자금액	2억원
투자시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납입
투자기간	최소 의무투자금액 2억원: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함

주1)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해지사유 발생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는 의무투자기간(중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펀드 투자를 유지)

주2)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운용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